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2 선고 2020가단67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4.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4. 3. 접수 제169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1057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2. 11. 9. “C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1. 7.부터 1998. 7. 25.까지는 연 5%, 1998. 7. 26.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25%, 2012.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30. 확정되었다.

나. D은 2007. 5. 31. 남편인 망 E(2007. 2. 12. 사망)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9. 11. 30. 사망하였다.

다. 피고와 F, C는 D의 자녀들이다. D이 사망한 후 F는 2020. 2. 10.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느단86호로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0. 3. 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와 C는 2020. 4. 1. D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4. 3. 접수 제169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와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직전인 2020.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사무소에서 같은 법무법인 등부 2020년 제480호로 위 약정서에 대한 인증을 마쳤다.

약정서

B와 C는 망 D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들로서 망 D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C의 상속지분 전부를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에 C는 동의하도록 한다.

B은 상기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를 매도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비용 등을 정산한 금액 중 40%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C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의 내용을 상호간에 약정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하기로 한다.

C의 가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C가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C에게는 모친인 D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의 액수가 합계 73,000,000원이 넘고, 이 법원의 안성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19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C가 안성시에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D의 상속채무액을 빼면 36,981,301원이 남게 되고, 위 금액 중 C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8,490,65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C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C는 1990년대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부친(E)이 다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부친이 사망한 후에도 모친(D)이 2018. 1. 14.경 안성시 H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C는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증여를 받았고, 그 특별수익분을 반영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D의 상속채무액을 뺀 금액 중 C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18,490,65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② 피고는 오랫동안 C와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모친(D)이 사망한 후에 모친의 핸드폰을 보고 C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는 부친의 노력으로 C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알고 있었고, 심지어 C도 이 사건 확정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C의 채무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이하 '피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성시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C가 피상속인인 D(또는 부친 E)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특별수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와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직전인 2020. 3. 24. 'C가 D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의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에 동의하고, 피고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를 매도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비용 등을 정산한 금액 중 40%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C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가 누나와 남동생 사이인 점, 피고도 과거 C가 1990년대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여기에 피고와 C가 2020. 3. 24.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4. 3. 접수 제169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등기원인일자만 D의 사망일자인 2019. 11. 30.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 부분 청구취지는 피고와 C 사이에 2020. 4.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